

제130회 임 시 회  
2006. 4. 10 (월) 10:00  
총 무 위 원 회

## 檢 討 報 告

-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
- 예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산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-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-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예산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안

專 門 委 員 鄭 樂 春

##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— 검토보고 —

### 개정이유

- 군립합창단 창단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 및 음악 발전에 앞장서 2005년도 제31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 등을 수상하여 우리군 선양에 기여한 바 있으며,
- 앞으로 더욱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할 수 있는 정기 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운영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음으로 개정(안 제4조 4항)
-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개정(안 제7조 1항)
- 활동비 및 경비의 별표1(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)를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2조 별표1)

### 참고사항

-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(2003. 12. 22)

□ 검토의견

○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

- 2004년도에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
- 지난해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을 선양한 바 있어 단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앞으로 군민에게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활동비 일부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.

○ 동 조례안 내용 중

- 운영위원회의 임기 연임과 단원의 위촉기간 연장 등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,
- 단원에게 직위별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인상은 인근 타 시·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.

##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3. 29

제출자 : 예산군수

### 개정이유

- 군립합창단 창단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예술문화 창달 및 음악 발전에 앞장서 2005년도 제31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 등을 수상하여 우리 군 선양에 기여한 바 있으며,
- 앞으로 더욱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 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운영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음으로 개정(안 제4조 4항)
-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개정(안 제7조 1항)
- 활동비 및 경비의 별표1(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)를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12조 별표1)

### 참고사항

- 예산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(2003. 12. 22)

예산군 조례 제273호

## 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임기는 2년으로 한다”를 “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”을 “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(월) (조례 제12조 관련)

직 위	활 동 비	직 위	활 동 비
지 휘 자	500,000	반 주 자	300,000
단 무 장	300,000	단 원	70,000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—  <u>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~③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④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 <u>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7조(단원의 위촉기간)①단원의 위촉기                      간은 <u>1년</u>으로 한다.</p> <p>—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(단원의 해촉)①-----  <u>각호의 1에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	<p>—  <u>예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</u></p> <p>제4조(운영위원회) ①~③(현행과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④-----  <u>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7조(단원의 위촉기간)①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<u>2년</u>-----.</p> <p>제10조(단원의 해촉)①-----  <u>각호의 어느하나에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1]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(월)(조례12조관련)				[별표 1]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(월)(조례12조관련)			
직 위	활동비	직 위	활동비	직 위	활동비	직 위	활동비
지휘자	300,000원	반주자	200,000원	지휘자	500,000원	반주자	300,000원
단무장	200,000원	단 원	50,000원	단무장	300,000원	단 원	70,000원